

울산지방법원 2020. 8. 18 선고 2019가단705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시호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창호

변 론 종 결 2020. 1. 7.

판 결 선 고 2020. 8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9. 10.부터 2020. 8. 1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

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7. 4월경 피고를 배우자 없는 사람들의 밴드 모임인 'C'의 야유회에서 처음 만났다.

나. 원고는 당시 유부남이었지만 피고에게 곧 이혼할 거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와 원고의 원룸에서 함께 살다시피 지냈다.

다. 원고가 2017. 11. 10.경 현금 40,000,000원을 원고의 처 D이 찾아내지 못하게 숨겨두려는 의미에서 피고에게 맡겼다.

라. D은 2017. 11. 17. 울산가정법원 2017드합2189호 이혼 등 사건으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한 소를 제기하였다.

마. 원고는 위 법원 2017드합2189호 이혼 등 사건의 소송계속중에도 피고와의 만남을 지속하였고, 심지어 이혼한 후에 피고와 혼인하겠다고 약속하였다.

바. 피고는 위 40,000,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018. 2월경에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.

사. 피고는 2018. 10. 1.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40,000,000원을 돌려주고자 은행에서 40,000,000원짜리 자기앞수표(E조합 북정지점앞 F, 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)로 출금하여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건네주었다.

아. 원고가 2018. 10. 28. 그대로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다시 교부하였다.

자. 피고는 2018. 10. 29.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. 차. D이 2019. 3. 6. 위 법원 2017드합2189호 이혼 등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.

카. D은 2019. 4. 12. 피고와 위 법원 2017드합2189호 이혼 등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.

타.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액면 금액과 같은 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.

[인정하는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 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제 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다툼

원고가 2018. 10. 28.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주었던 것을 가지고 이를, 원고는 소비임치(표현상 임치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듯하나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특정물로 임치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표현의 주장은 무시한다)라고 주장하고, 피고는 증여라고 다룬다.

나. 판단

1)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가운데 특히, ①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교부 이전에 원고가 2017. 11. 10.경 피고에게 현금 40,000,000원을 맡겨 두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는 사실, ②피고가 원고로부터 맡았던 위 현금 40,000,000원도 또 이후에 교부받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도 모두 소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에다가 피고도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은 사유에 관하여 ‘약속의 증표’였다는 것 이상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, 원고가 2018. 10. 28.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은 증여라고 하기 보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보관을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소비임치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다.

2) 이 사건 소비임치에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(민법 제702조 단서의 규정 참조).

3)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액면과 같은 금액의 돈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19. 9. 10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

있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. 8. 18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명한